

	모집단위개편및정원조정에관한규정	규정번호	3-3-22
		제정일자	2015. 3. 1.
		개정일자	2026.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민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집단위(이하 “학과” 라 한다)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이하 “학과개편” 이라 한다) 은 대학 학칙에서 정한 설치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의 신설, 통합, 분리, 명칭변경, 폐지, 정원조정, 수업연한 변경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 신설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과 통합은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과 분리는 기존 1개의 학과를 2개 이상의 학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4. 학과 명칭변경은 기존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학과 폐지는 학칙 제5조의 학과 및 입학정원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6. 학과 정원조정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7. 학과 수업연한 변경은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원칙) 학과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개정 2025.9.1.)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3.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용
4. 학과의 주요 평가 지표(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교육원가환원율)

제5조(학과개편의 기준 및 유형) ① 학과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 경쟁력 등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

- ② 학과 통합, 폐지, 정원조정은 학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입생충원 경쟁력, 재학생충원율 및 대학 특성화 정책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 ③ 학과 분리, 명칭변경 및 수업연한 변경은 신입생 충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대학 특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학과개편의 절차) ① 학과개편은 매 학년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과개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관련부서와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과개편(안)은 학과구조조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개정 2023.9.1., 2025.9.1.)

1. 학과평가
2. 학과개편(안) 수립
3.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4.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5. 학과개편 결과 확정
6. 학과개편 후속조치 시행

제7조(학과구조조정위원회) ①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과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1.)
 1.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
 2. 학과개편 기준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1.]

제8조(학과평가) ① 학과평가는 신입생 모집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 매년 실시한다.

- ② 신설 학과는 편제 완성 후 2년까지 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중 한 개 이상의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를 유예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1.)
- ③ 삭제 <2025.9.1.>
- ④ 학과평가 지표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교육원가환원율 등으로 구성하며, 지표별 배점 및 산출 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5.9.1.)

제8조의2(순위 및 등급) ① 학과평가는 상대평가로 시행하며, 학과 평가지표 [별표 1] 산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전체에서의 학과평가 순위(등급)를 [별표 2] 와 같이 정한다.

- ② D등급 및 E등급으로 평가받은 학과는 유사학과와 통합 등 자구노력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교육원가환원율 등을 포함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5.9.1.]

제8조의3(정원조정 및 폐지) ① 학과 정원조정 및 폐지는 평가 순위(등급) [별표 2] 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D등급, E등급 학과는 입학정원을 최대 15% 이내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감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해연도 신입생 충원율이 80% 미만인 E등급 학과는 입학정원의 최대 30% 이내 감축과 학과 폐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만,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은 신설학과 및 기존학과로 배정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신입생 충원율이 100%인 학과는 학과개편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

제9조(학생보호 조치) ① 대학은 통합 및 폐지된 학과의 학생에 대하여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폐지가 결정된 학과는 학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학과를 유지하며,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용한다.
- ③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한 경우 이전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6.3.1.]

제10조(교원 후속조치) ① 대학은 학과 통합 및 폐지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합 및 폐지 학과 소속의 교원은 「교원전공전환및소속학과변경에관한규정」에 따라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공 전환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학과 변경 신청이나 전공전환 학위 취득 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학 관련규정에 따라 폐과 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3.1.)
- ④ 학과의 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인한 교원의 직권면직은 학교법인 경민학원 정관 및 교원 인사관련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3.1.)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과및입학정원조정에관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9.1.)

학과 평가지표 배점 및 산출 방법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산출방법	기준일
입학	신입생충원율	40	$\{(\text{정원내 입학자 수} / \text{정원내 모집인원}) \times 100\} \times 40\text{점}$	당해연도 4월 1일
재학	중도탈락률	10	$1 / \{(\text{중도탈락 학생 수} / \text{재적학생 수}) \times 100\} \times 10\text{점}$	당해연도 2월 말일
	재학생충원율	20	$\{(\text{정원내 재학생수} / \text{학생정원}) \times 100\} \times 20\text{점}$	당해연도 4월 1일
취업	취업률	30	$\{(\text{취업자} / \text{취업대상자}) \times 100\} \times 30\text{점}$	전전년도 12월 31일
재정	교육원가 환원율	-	$(\text{학생 1인당 교육원가} / \text{학생 1인당 등록금}) \times 100$	직전 학년도 회계기준

1. 평가 지표는 최근 2개년도 자료에 대하여 매년 평가한다.
2. 신입생충원율에서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정원내 입학자 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평가 지표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점수는 최근 2개년도 평가지표에 의해 산출된 점수의 합의 평균으로 부여한다. 단, 교육원가환원율은 직전 학년도(1개년도) 지표값을 적용하며, 제8조에 따른 평가유예 학과를 포함한다.
5. 평가 지표값 및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6. 학과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평가 지표값이 없는 경우 통합 이전 학과들의 지표 평균값을 활용하며, 학과가 분리되어 해당 평가 지표값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 이전 학과의 지표값을 활용한다.

[별표 2] (신설 2025.9.1.)

학과평가 순위(등급)

평가등급	기준 등급 구간
A	평가순위 백분율 상위 20% 이하
B	평가순위 백분율 상위 20% 초과 ~ 40% 이하
C	평가순위 백분율 상위 40% 초과 ~ 70% 이하
D	평가순위 백분율 상위 70% 초과 ~ 90% 이하
E	평가순위 백분율 상위 90% 초과

1. 당해연도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준 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학과 수는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산정한다.